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70,135,233	68,104,057
일반회계	2,050,363,742	61,510,912
특별회계	219,771,491	6,593,145
공기업특별회계	181,361,695	5,440,8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5,068,615	2,552,05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293,080	2,888,792
기타특별회계	38,409,796	1,152,294
주택사업특별회계	98,000	2,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341,323	400,240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116,024	63,48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86,503	26,595
교통사업특별회계	19,703,246	591,097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	150
수질개선특별회계	2,184,100	65,5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으로 한다

제 6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4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